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21. 12. 01.(수) 10:03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안형환 상임위원 (1인)

제5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3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1년도 제5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5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방송정책국, 이용자정책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1-51-161)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필교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 이유입니다.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관련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신설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금년 9월 13일에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드렸습니다.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입법예고에서 제기된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서 재입법예고를 11월 15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제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과징금 금액 및 산정절차 등입니다. 입법예고 및 재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방송사에게 과도하여 과징금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완화 요청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최대 3%에서 1.5%로 완화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차등화하는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재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사업자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재입법예고안은 방송통신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고, 사업자의 반대 의견도 없었으며, 방송사가 방송재난관리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므로 과기정통부 의견 수용을 건의드립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과기정통부가 내일 차관회의에 상정합니다. 시행일은 12월 9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이 9월에 위원회에 보고된 사안입니까?
- 임필교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 이후 경과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안건으로 채택됐다는 것도 여기에 와서 알았습니다.
- 임필교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장
 - 제가 어제 서면으로 비서관을 통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상혁 위원장
 -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고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2020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2020년도 이행 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부가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2020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허가 조건 이행 여부 점검결과입니다. 점검대상은 49개 방송사에 부가된 허가조건 총 443건입니다. DTV, 라디오는 총 307건이고, UHD TV는 총 136건입니다. 점검 결과 개요입니다. 49개 지상파방송사에 부가된 총 443건의 허가 조건에 대해 방송사별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443건의 허가조건 중 439건은 이행, 4건은 미이행으로 이행률은 99.1%입니다. 허가조건 이행현황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사별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총 매출액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 3% 이상 집행, 상위직급 비율 감축 등 총 24건의 허가조건 중 23건 이행(1건 보완 필요), 1건

미이행입니다. 미이행 1건의 조건 내용을 보시면 '19년 UHD 재허가 조건으로 '허가신청서의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집행할 것' 조건이 있었는데 이행실적을 한번 보시면 '20년 UHD 콘텐츠 투자금액 계획 대비 261억원 미달하여 집행한 내용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제작환경 변화 및 도쿄올림픽 연기에 따라 '20년 UHD 콘텐츠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21년 도쿄올림픽 개최 등에 따라 '21년 UHD 콘텐츠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20년 도쿄올림픽 연기 등 조건 미이행의 불가피성, 미집행금액을 '21년도에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21년 이후 투자계획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행정지도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보완 필요사항 1건에 대해서는 '17년 재허가 조건으로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재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할 것'이 부가된 바 있습니다. 이행실적으로 '19년 10월 KBS는 정원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고, '21년 4월에는 G0직급 정원을 99명 감축한 정원표를 개정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KBS는 G0 직급 정원을 감축한 정원표를 제출하였으나, '20년 말 기준 G2직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이 56.5%로 KBS가 '19년 10월 제출한 직급체계 개선계획상의 예상치 54.6%보다 높게 운영하고 있어, 조건 부가 취지를 일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위직급 비율을 '19년 직급체계 개선계획에 준하여 운영하도록 행정지도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KBS 기관정기감사」 결과 발표에서도 KBS가 '20년 말 상위직급 비율을 방통위에 제출한 계획보다 높게 운영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문화방송입니다. 편성위원회 정기 개최,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 등 총 10건의 허가 조건 중 9건 이행, 1건 미이행입니다. 미이행 1건은 역시 '2019년 UHD 허가신청서의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집행할 것' 재허가 조건에 대해 이행실적은 '20년 UHD 콘텐츠 투자금액 계획 대비 236억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한 사유는 '20년 도쿄올림픽 연기, 비상경영 체제에 따른 UHD 드라마 제작시스템 전면 개편 시행에 따른 투자 계획 조정 등입니다. 점검결과는 (주)문화방송은 '20년 도쿄올림픽 연기, 드라마 제작시스템 전면 개편 등으로 인해 '20년 투자 실적이 저조했다고 하나, 도쿄올림픽이 실시된 '21년도에 당초 투자계획보다 적은 투자계획을 제출하는 등 조건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0년 UHD 투자 미집행금액을 '21년 이후에 추가 투자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주)에스비에스는 SBS와 계열회사 간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 합리화,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유지 등 14건의 허가 조건 중 14건 모두 이행하였으나 1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완 필요한 사항은 SBS 경쟁력 제고를 위해 SBS 최다액출자자의 투자 등 기여방안을 담은 미래발전계획을 SBS 종사자 대표와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한 조건이 있었는데 점검결과 'SBS 미래발전계획'에는 SBS 최다액출자자의 투자 펀드참여 등이 포함되었으나 투자규모 및 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SBS 미래발전계획"의 구체성을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가 지난 9월에 있었는데 심사위원회에서는 SBS에 대해서도 '최다액출자자 지원방안에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미래발전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 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관련 제작가이드라인 보완,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 등 총 4건의 허가 조건 중 4건 이행, 1건 보완 필요입니다. 보완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관련 사항을 제작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교육 계획을 마련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점검결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작가이드라인 내용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작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의 범위가 유아·어린이·청소년 출연자에 한정되어 있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 교육, 건강상담 등을 사유로 수집될 수 있는 시청자의 개인정보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가이드라인을 추가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MBC 16개사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금운영규칙 마련, 방송사업 이외 부대사업 추진현황 제출, 총 매출액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 10% 이상 집행 등 총 175건의 허가 조건 중 175건 모두 이행을 했습니다. 보완필요 사항은 부산MBC '17년 재허가 조건 관련해서 무인송신소 사고재발 방지 등 방송 송출 안정성 확보 계획을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할 것이 있었는데, 점검결과 방송 송출 안정성 확보계획에 따른 정기점검 시 배터리 이상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1년 10월 20일 황령산송신소 화재 발생으로 장기간 방송이 중단되는 등 조건 부가취지를 일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역민방 10개사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관련 보도 현황 제출, 사외이사·감사 등의 장기 연임 제한 관련 규정 마련,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계획 준수 등 총 156건의 허가 조건 중 155건이 이행, 1건 미이행입니다. 미이행 1건은 TBC의 '19년 재허가 조건으로 경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해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유지 조건이 있었는데, 이행실적을 보시면 TBC는 '21년 3월 주총에서 대표이사를 교체하면서 최다액출자자 측인 송경석 대표만을 TBC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방송전문경영인 대표이사는 선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TBC는 '22년 3월 주총에서 전문경영인을 선임하겠으며, 그전까지 방송부문 업무 전반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방송이사가 위임전결하겠다는 “방송전문경영인 선임 보완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유지'라는 재허가 조건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원회에 제출한 확실히 이행되도록 '22년 3월까지 방송전문경영인을 선임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완필요 사항 1건은 OBS에 대한 것으로 '19년 재허가 시 제출한 '사옥의 인천이전 추진계획'을 이행하는 내용이었는데, 당초 '21년 4분기에서 '23년 2분기로 1년 6개월가량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점검 결과, OBS 사옥의 인천이전 지연은 인천시가 추진하기로 한 '방송환경공사' 계획 변경이 주요 원인이며 OBS 사옥이전은 현재 진행중이므로 방송사옥 이전 관련 향후 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디오 13개사는 총 48건의 허가조건 중 47건 이행, 1건 미이행입니다. 미이행 현황은 극동전북FM이 제작비 투자 확대 계획대로 이행을 못한 내용인데 '20년 제작비 투자 금액 계획 대비 500만원 정도 미달된 내용입니다. 점검결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송제작환경 변화 등 조건 미이행의 불가피성, 미이행 정도가 경미하며 향후 미집행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21년 이후 투자계획은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행정지도 조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동체라디오 7개사는 총 12건의 허가 조건 중 12건 모두 이행입니다. 다음 주요 권고사항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 부가현황은 49개 방송사에 총 655건의 권고사항을 부가하였으며, 주요 권고사항 점검결과 보도·오락·교양 분야별 다양한 UHD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해서 KBS와 SBS는 보도·오락·교양 분야별로 UHD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중이나, MBC는 보도분야 UHD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지 않아, 권고사항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시청자 불만제기 시 재발방지 대책 등 시청자 권익보호방안 마련 권고 사항입니다. 지역MBC, 지역민방, 라디오 등에 부가되었는데 모두 준수 중으로 판단되며,

다음 과도한 배당 지양 및 소액주주를 위한 차등배당방안 강구 권고사항은 지역민방은 울산, 제주, 청주방송은 '20년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그 외 4개 지역민방은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전주방송은 '20년 전체산업 평균 배당성향을 상회하는 배당을 실시하여 권고사항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역MBC는 대부분의 방송사가 당기손익 적자로 '20년 배당실적이 없습니다만 제주MBC, 목포MBC, 여수MBC, 원주MBC는 전체산업 평가 배당성향 이후의 배당을 실시하거나 주주별로 차등 배당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사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대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 지양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타 방송사는 문제지 없다고 보며, 다만 TBC가 최대액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와 유형자산 매각, 임차료 지급 등 약 1억 1,600만원의 거래실적이 있으나, 방송사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성별, 연령별, 직능별 다양한 확보 권고사항이 TBN에 부가되었는데 대체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부금 집행 및 회계감사기준 등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 법령 준수 권고가 5개 종교방송에 부가되었는데 모두 다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치 방안입니다. 콘텐츠 투자실적을 미달한 방송사에 대해 미이행사유 및 향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또는 행정지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와 극동방송에 대해서는 '21년 이후 투자계획은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조치하고, (주)문화방송에 대해서는 '20년 도쿄올림픽 연기 등의 사유가 있으나, '21년도에 당초 계획보다 적은 투자계획을 제출하는 등 조건 이행 의지가 미흡하므로, '20년 투자 미집행 금액을 추가 투자하도록 시정명령 부과를 추진하겠습니다. 방송전문경영인제도 유지 조건을 위반한 지역민방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TBC에 대해 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22년 3월까지 방송전문경영인을 선임하여 조건 미이행 상태를 개선하도록 시정명령 부과를 추진하겠습니다. 방송사 이행내역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건부가 취지 달성을 위해 이행내역을 보완하도록 방송사에 행정지도 조치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 대해 상위직급 비율 감축 관련, '19년 제출한 직급체계 개선계획에 준하여 상위직급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조치하고, SBS에 대해 SBS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대액출자자의 기여방안 미흡과 관련하여 "SBS 미래발전계획"의 구체성을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조치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될 수 있는 시청자의 개인정보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가이드라인을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조치하고, OBS에 대해서는 사육이전 일정이 향후 일정에 차질 없도록 행정지도 조치하고, 부산MBC에 대해서는 무인송신소 사고방지 조치가 미흡하였으므로 향후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조치하겠습니다. UHD 프로그램 편성계획과 관련해서 권고사항을 미준수한 MBC와 과도한 배당 지양 관련 권고사항을 미준수한 전주방송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조치하고, '21년 이행실적 점검 시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2월 중으로 행정지도 조치 및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지상파방송사 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21년 이행실적 점검결과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5페이지 MBC를 보면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것을 2021에 도쿄올림픽을 했는데도 집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획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제시한 수준 자체가 재허가 당시에 제출한 그 수준보다 낮춰서 향후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원래 약속을 어기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입니까? 못 지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못 지킨다는 것입니까?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비상경영체제에 따라 UHD 드라마 제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내부적인 정책 변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앞으로도 UHD 투자는 원래 계획대로 못 하겠다는 것입니까?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일단 MBC에서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만 저희가 시정명령을 처분하고 그 이후 MBC….

○ 김효재 상임위원

- 만약에 시정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투자하기로 했던 UHD 프로그램 투자계획을 못 지킨 것은 KBS도 그렇고 똑같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KBS는 올해 도쿄올림픽을 해서 작년에 했던 약속을 상당 부분 지켰고, 지금 거의 지킬 것으로 예측되어서 그것은 우리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겠구나 이해가 되는데 MBC는 작년에 투자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알겠는데 올해도 계획을 적게 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시정명령을 했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법상 시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그동안의 관례로 보면 추가로 시정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시정명령 다음 단계로 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 김효재 상임위원

- 다음 단계가 무엇이지요?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법상으로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등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MBC가 시정명령 불이행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MBC에서도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 김효재 상임위원

-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오늘 전체적인 모든 방송사의 재허가 이행 점검한 것을 보고드리는데 보고사항이고, 구체적인 시정명령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무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소명자료가 나오면 그때 가서 판단하고 또 논의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다음에 어차피 안전으로….

○ 김효재 상임위원

- 2가지가 눈에 띄어서 첫 번째는 MBC의 UHD 투자 분야이고, 두 번째는 KBS의 인력 정원 조정에 관한 계획을 처음에는 잘 내지 않다가 나중에 낸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그것은 또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까지 받은 사안입니다. 다른 사안들은 '이런 사정이 있었겠구나', '저런 사정이 있었겠구나'라는 사업자의 소명이 이해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는 왜 이렇게 됐나 싶고, 그리고 왜 KBS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아니라 행정지도인지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 보고는 받고 통보한 후 그다음에 두 사업자의 대응이 무엇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전체 보니까 UHD 투자계획은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올림픽도 연기되고, 주로 UHD 편성비율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계획상에서는 올림픽 할 때 UHD로 제작해서 중계 하겠다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올림픽도 아시다시피 KBS는 갔지만 MBC는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제작을 MBC가 못 하니까 아마 집행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또 드라마를 사실상 올해 거의 투자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소명을 들어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KBS 정원 부분은 우리가 조건을 붙일 때 구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위직급 비율 감축하는 형태의 직제규정을 개정하고 정원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는 과정에서 정원표는 상위직급을 감축한다고 제출했는데 그것이 2024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문서에 연도별 계획이 쪽 나와 있는데 2025년까지입니다. 2025년까지 50% 미만으로 내리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연도별 계획이 예시로 '예측'이라고 해서 제출되었는데 그것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것이 이행이 안 됐다, 미이행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예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이것을 '이행 미흡'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조치 지도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국장님 설명을 듣고 조금 이해가 됐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지도 대신에 시정명령이 나가는데 지금 그런 설명을 듣고 보니까 행정지도가 불가피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되는 자세한 보고를 따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SBS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견진술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SBS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아는데 왜 똑같이 이번에도 행정지도가 되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지요. SBS에 행정지도 나가는 것이 처음입니까?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SBS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점검과 관련해서는 행정지도 부분은 제 기억에 근래에는 처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그런데 사건 중 보완이 필요한 것이 1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해서 재허가 사항 중 2020년도에 14건을 조건으로 붙였지 않습니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다액 출자자 투자 등 기여방안을 담은 미래발전계획을 SBS종사자 대표와 협의하여 마련해서

제출할 것' 이렇게 해서 올해 상반기에 받아서 그중 부족하다고 해서 행정지도입니다. 최근에 몇 차례에 걸쳐 이야기했지만 노조에서 추천한 사외이사를 SBS 경영진 측에서 없앴고 올해는 사장임명동의제를 없앴고 그다음에 단체협약을 파기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2020년 이행실적 중 미래발전계획을 SBS종사자 대표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2017년도 합의문을 방통위에 제출했고, 2019년도에도 역시 잘 지키겠다고 합의문을 제출했고, 2020년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단협 상태로 파업에 곧 돌입하게 되는 SBS종사자 측에서는 미래발전계획에 대해 전혀 합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추천제를 일방적으로 폐기했다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방통위는 구체성을 보완토록 행정지도 조치를 하겠다는 아주 약한 처분을 가지고 SBS에 보완하라는 입장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참고자료 3페이지와 14페이지인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14페이지에 있는 이사 추천에 대한 것입니다. SBS·KNN·대전방송 재허가 조건에 보면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유지, 독립적인 사외이사 복수 위촉, 감사제도 강화 등을 시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렸던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제도를 2008년도부터 시행했던 것인데 이것을 폐기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갑론을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행실적을 보면 '방송전문경영인 박정훈 사장 단독대표, 사외이사 3명, 감사위원회 운영 등' 이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종사자 대표는 이미 방통위에 제출된 자료 '2021년 6월 30일 미래발전계획 협의 관련 종사자 대표 의견서'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이고, 이어서 사장임명동의제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경영진에서 제출한 자료에 입각해서 이행실적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종사자대표들이 주장하고 종사자대표뿐만 아니라 SBS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경영진에 넘겼고 그다음에 방통위에도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마당이고, 그리고 노조에서는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SBS 문제를 아무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방송사들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보고 행정조치를 하겠다, 지금 사무처의 의견이 이런 판단이 아닌가, 아주 안일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오늘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점검 그리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이 기본적으로 2020년도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재허가 조건의 유형을 한번 보시면 무슨 계획을 수립하여 4월까지 제출할 것, 6월까지 제출할 것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떠한 내용들을 지킬 것 이런 형식으로 붙는 재허가 조건들이 있습니다. 통상 재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간이 있는 내용들은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관계로 통상 상반기까지 자료를 다 같이 모아 분석해서 하반기 즈음에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는 패턴이었습니다. 지금 SBS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되는 내용은 이른바 2017년도의 노사 합의 사항이 있었던 10.13 합의사항을 당시에 재허가받는 과정에서 SBS 측에서 위원회에 제출했고, 위원회가 그것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년도 재허가받을 때도 권고사항으로 '그 사항을 준수할 것' 내용이 붙어 있었습니다.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오늘 보고드렸습니다만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서는 '20년 내용 중심으로 보고

드렸던 바이고 그리고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특히 작년 재허가 조건에 SBS에 붙었던 미래발전계획 부분에 대해서 올해 9월에 특별히 TY홀딩스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하면서 그 내용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내용과 함께 SBS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특별한 주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정조치하겠다고 했던 내용들은 SBS의 미래발전계획을 위한 투자 규모와 시점 등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외이사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붙임>자료 14페이지에 있는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유지, 독립적인 사외이사 복수 위촉, 감사제도 강화 등을 시행하고 그 이행을 제출할 것' 이 조건은 당시 SBS·KNN·대전방송 등 민방에 대해 전체적으로 붙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건에 대해 판단할 때는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복수 위촉되어 있는지 타 방송사들과 같은 측면에서 봤던 내용이고, 방송전문경영인 유지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장이 방송전문경영인인지 아닌지 수준으로만 판단했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외이사가 복수로 위촉되고 있던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이 조건은 이행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당사자 간 합의해서 노조가 추천하는 사외이사가 포함되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그 합의가 파기되었다는 주장이고, 그래서 10.13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서 2008년도에 있었던 내용들로 2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노조가 추천하고 1명을 뽑는 내용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노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당시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시하지 않아서 '20년도에 관철이 되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이행실적 점검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는 '20년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대강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제되는 내용들은 SBS가 10.13 합의서가 파기되었다고 발표하고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주로 '21년 중심입니다. 그래서 실무 판단에서는 이 이행실적을 저희가 내년 들어가서, 물론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들어가서 점검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그것은 아주 평이한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도에 각 지상파방송사들이 내용을 겪으면서 종사자들이 개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간 갈등이 여전히 방송사에 남아 있는 숙제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지만 SBS가 이때 합의문을 제출한 것이 평이한 상태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보도지침이 공개가 되었고, 폭로가 되어서 경영진의 교체가 있어야 하는 필연적 상황 때문에 합의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SBS 내에서 새롭게 발견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고발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SBS와 SBS종사자 간의 문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그 합의문을 받았을 때 SBS가 어떻게 개혁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방통위를 통해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2017년도에 재허가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재허가를 낼 때도 그것이 존중된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 1월에 사장임명제를 파기한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결론이 나는 데는 경영진이 보이지 않게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국민 대다수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어서 파업으로까지 전개될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재허가를 함에 있어서 조건으로 붙인 내용에 대해 방통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나

오는 기여방안을 담은 미래발전계획을 SBS종사자 대표와 협의하여 마련하라, 사무처에서는 이것이 관철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SBS종사자 대표와 협의해서 미래발전 계획서가 제출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UHD 관련한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등 SBS경쟁력 제고를 위한 출자자의 투자 등 기여방안을 담은 미래발전계획을 밝히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UHD 콘텐츠에 투자하라는 것이 단순히 뒤에 붙어 있는 20 몇 억, 30 몇 억 이것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요구되는, 지상파에 요구되는 콘텐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하자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종사자 대표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장임명동의제입니다. 그다음에 노조추천의 사외이사, 그 몫입니다. 이것이 견제장치입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가 그런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본부장 임명동의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준 것입니다. 이것이 2020년도까지의 계획서이기 때문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방통위가 '그것은 내년에 보고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시의성, 현실성과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가지고 온 것을 검시해서 의견 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종사자들의 문제제기를 그냥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우리가 안 보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조치는 대단히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SBS의 2017년도~2021년 현재까지 상황을 행정지도 조치 정도로만 보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 다음번 의결안을 제출할 때 12월 SBS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다시 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의결할 때 그런 심각성이 반영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게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벌어진 SBS의 문제, 그다음에 TY홀딩스와 SBS미디어홀딩스와 최대주주의 변경까지 과정에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결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제정에 관한 건 (2021-52-162)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제정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정 인터넷윤리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제정에 관한 건입니다. <1> 의결 주문입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 중 제3호의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21년 12월 10일부터 '22년 6월 9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추진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 주요 내용입니다. <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의 수립·시행,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나> 신고기능 마련 및 신고·삭제 요청 처리, 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신고된 게시물이 불법촬영물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다> 검색제한 조치 및 게재제한 조치,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하고, 연관검색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이나 최근 2년 이내에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상시적으로 적용하고, 불법촬영물등 식별 시 해당 정보 게재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나> 사전경고 조치 등 로그기록 보관, 불법촬영물등 게재 시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성능평가 수행기관의 역할 및 성능평가 기준, 성능평가 수행기관(TTA)의 역할과 성능평가 시 평가지표, ①식별가능성, ②일관성 등 평가지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 위원회 보고 후 변경사항입니다. 국조실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안 제3조제2항)에 '5. 그 밖에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대신 본문에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로 사업자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6> 계도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12월 10일부터 즉시 시행하되, '식별 및 게재제한'(시행령 제30조의6제2항제3호)에 한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란으로 일부 대상사업자들이 법 시행일인 2021년 12월 10일 전까지 서버 등 장비수급이 어려운 점, 실제 서비스 환경에 새로운 기술적 조치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점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12월 10일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이 시급히 필요한 법이긴 하지만 사업자들의 상황 적응을 위하고, 또 하나 반도체 수급도 고려해서 계도기간을 둔 것에 찬성하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만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면 이런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까?

○ 김미정 인터넷윤리팀장

- 일단 반도체 수급난으로 장기간 늦는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시스템에 적용시켜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문제점들을 꼼꼼히 챙겨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지금 고시가 국외 사업자에 대한 조치도 병행되는 것입니까?

○ 김미정 인터넷윤리팀장

- 예,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만약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외 사업자가 이런 조치에 대해 순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장치가 있습니까?

○ 김미정 인터넷윤리팀장

- 그것은 현행 법 시행령 고시를 그대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최근에 방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법을 제·개정할 때 국내사업자들이 불 때 물론 이것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고 해외 사업자들이나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사안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편파 시비가 있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있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단호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미정 인터넷윤리팀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n번방 사건 관련한 규정 정비 문제는 계속 필연적으로 실효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다 걸려진다면 해결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게재되고 그것들이 유통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에 대한 논란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불법 촬영물 유통을 최대한 억제하고 줄여 나가겠다는 우리의 정책의지는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그런 경우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대비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들을 통보하는 방안에 대해서까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 역시 이견이 없으므로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 (2021-52-163)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다>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

-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별지]와 의결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추진경과입니다. 금년 5월 26일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하였고, 7월 1일에 평가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4> 평가개요입니다. 평가대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대상 사업자는 이동전화 등 7개 분야 40개사이고,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평가위원회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 총 20인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평가기준 및 배점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등 5개 분야 총 90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평가기준과 배점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가방법입니다. 평가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고객센터 최고책임자 면담 등 사업자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평가는 화상평가로 대체 실시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사업자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등 실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5> 평가결과입니다. 먼저 평가점수는 평가 대상 40개 전기통신사업자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856.5점으로 작년도 전체 평균인 859.2점보다 2.7점 하락하였습니다. 시범평가 사업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818.8점입니다. 평가등급의 경우 매우우수 등급의 경우 전년도 6개사와 달리 0개사로 평가가 되었고, 우수 13개사, 양호 9개사, 보통과 미흡은 각 3개사입니다. 총평입니다. 대형 통신사들은 우사 등급이나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개선이 필요한 반면, 일부 알뜰폰 및 글로벌사업자를 포함한 부가통신 분야의 평가등급이 향상되어 평가 호응도 및 평가 효과가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평가기준별 평가결과는 상세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 평가결과 특이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평가분야별 주요 평가결과입니다. 이동전화 분야의 경우 모두 ‘우수’ 등급이나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5G 품질저하 등 신규

서비스 가입 및 이용, 해지 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 노력 관련 항목의 평가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며, 서비스 가입 시 요금상품별 최저속도 사전 안내, 인터넷 개통 후 속도 측정 결과 고지 등 관련 평가항목들이 미흡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알뜰폰의 경우 전년 대비 이용자 보호 노력 등이 향상되어 긍정적이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설명 등이 여전히 미흡하며, 중소기업 또는 신규 평가 대상 사업자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애플마켓의 경우 구글·삼성·윈스토어 등 국내외 사업자 모두 전반적으로 평가등급이 향상되었으나, 애플의 경우에는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결제방법 및 구체성 있는 자료제출 개선이 필요하여 4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현장 평가 실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평가대상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객센터 최고책임자 면담 등 화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에도 화상면담 평가를 실시하여 일본, 미국, 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접속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시범평가 관련하여 금년 처음으로 평가대상으로 추가된 12개 서비스의 시범평가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평가제도의 이해 부족 및 자료 미비로 미흡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부가통신 분야의 경우 네이버쇼핑 및 네이버밴드가 '양호' 등급을 받았고, 11번가의 경우에는 '보통' 등급을 받았으며, 그 외 신규 사업자는 모두 '미흡' 등급을 받았으나, 700점 중후반의 평가결과를 받아 비교적 긍정적인 상황으로 향후 컨설팅 등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고객센터 운영현황 관련입니다. 일부 해외사업자는 고객센터 연락처 등의 안내가 미흡하고, ARS 서비스 미운영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평가가 곤란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평가 대상 사업자는 고객응대근로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상세한 <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20년 평가결과 대비 개선된 사항입니다.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를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감점 사항 등 외부에서 제기된 미흡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사업자별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6> 평가위원회 의견입니다. 먼저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과 관련하여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통신서비스의 중요성 및 이용자 증가 대비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인식 변화는 다소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평가에 익숙해진 사업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 대내외적으로 시사점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알뜰폰 분야의 경우 비대면 시대 도래에 따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판매·유통 채널에 대한 신규 평가항목 도입 및 점검이 필요하며, 부가통신 분야의 경우 기존·신규 글로벌 사업자 전반적으로 평가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일부 해외사업자는 여전히 평가자료 제출 및 현장점검 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평가업무 개선과 관련하여 평가대상 확대, 평가기준 정비, 평가 컨설팅 강화, 평가제도 안내 강화 등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20페이지 <7> 향후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평가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신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출시와 확대, 이용자 및 신규 민원 등의 급증을 고려하여 모빌리티 분야 등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분야 신규 지표 개발 및 개선, 통신장애 등 다양한 지표를 개선하고 배점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컨설팅과 관련하여 신규 평가대상 사업자 및 평가결과가 저조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확대 시행하여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8> 평가결과 활용 부분입니다. 평가결과 환류를 위해 우수사례와 미흡사항 안내를 통해 유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 감경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평가결과를 상세하게 통보하여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업자별로 평가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금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엇그제 첫 보고했을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작년 1년 동안 이동통신의 상황을 평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인데 2020년 상황을 2021년 12월에 하는 것이 약간 시일을 놓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방통위가 오늘 보도자료를 내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2021년도 평가자료인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업무 처리 속도라는 것이 거의 빛의 속도인데, 그래서 제가 경과를 보니까 6월에 처음 시작해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각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받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이것을 점검하는데 5개월~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겠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평가를 구조적으로 앞당겨서 최소한 전반기가 마무리될 때쯤이면 그 전 해의 사업평가가 이루어져서 국민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지적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으로 알고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

- 시의성 있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들은 2021년 12월에 이런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21년 한 해를 결산하는 것으로 자칫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상반기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보니까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매우 작년에 매우우수 평가를 받았던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하락이 두드러졌는데 원래 인터넷 속도 논란과 또 접속 장애 사태 KT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SKT 같은 경우 재판 패소 후 능력 배상하는 등 이런 우리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권익보호를 소홀히 한 사건들이 아마 이번 평가결과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평가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이용자 보호 인식도 높여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평가에는

알뜰폰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에서 평가대상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최근 급격히 증가한 신규 플랫폼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2021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비대면 시기에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구분에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부가통신 정보유통, 부가통신 앱마켓, 부가통신 미디어, 부가통신 쇼핑배달 이렇게 구분해서 7개 분야 40개사로 했는데 물론 이용자 보호업무라는 기준에서 그렇게 구분을 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정부부처 안에서 정보유통과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서 부가통신, 예를 들어 정보유통으로 구분한 네이버와 카카오톡이 부가통신 미디어 영역 과도 같이 봐야 하는 것 아니냐, 포털이 단순한 정보유통이냐 아니면 미디어 영역이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OTT 관련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법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로 구분된 OTT 영역에 대해서도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처와 국회 법제화되고 있는 부분과 같이 연관되어서 통일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통신사업자의 전반적인 이용자 보호활동을 살펴서 평가를 했는데 올해 KT에서 발생했던 그 건을 놓고 이용약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12월 시점에서 일부는 예전에 3시간, 4시간 이런 구분보다 훨씬 더 1초 1분이 국민 생명 안전 또는 실생활에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통신장애 사고에 대한 면밀한 검토 또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통신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용자들의 요구를 파악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낼 때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과제 중 온라인 플랫폼상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방통위에서 내년 예산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편을 원스톱으로 또는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것들이 효율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국회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의 그런 불편함들이 가중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더욱더 분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평가대상 기간에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인터넷 서비스 중단 사태 등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가 '매우우수'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최근의 사태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까지 추론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정부부처에서 하는 평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보고서에도 있었지만 환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에 그치지 않고 평가를 통해서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수준이 향상되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만 평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결과 발표만으로 끝난다면 그런 평가는 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결과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상승시키고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 것은 과징금 부과 시 감경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것 말고도 이 평가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깊이 고민해서 제도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반대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 안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이유입니다. 위치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등록·변경 등록 절차 및 심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 항목입니다.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제 변경된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의 사업계획서 및 세부심사기준을 아래 별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 항목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범위를 위치정보 시스템 중 중요한 부분의 변경으로 한정하겠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신청 서류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과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항목입니다. 위치정보사업자의 위반 행위와 관련된 서비스 매출액의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과징금 산정기준을 명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사업정지로 동일한 경우 정지기간의 합산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산정 그리고 필수적 가중·감경 부분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타법과 유사법령의 사례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치정보법에는 과태료의 가중·감경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가중·감경 사유는 구체화하는 등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라> 항목입니다.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기타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적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관련 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위치정보 보호 조치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일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항목입니다. 위치정보법 제21조의2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바> 항목입니다.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할 때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최대 1년 이내 기간 동안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사> 항목입니다.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인가절차 및 사업 범위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의무화함에 따라 실태점검의 점검사항, 방법 및 절차들을 아래와 같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항목입니다. 위치정보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시정명령의 공개방법·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타법의 사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원안 접수해 주시면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규제위 심사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으며, 아울러서 해당 시행령과 관련 있는 고시 등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위치정보법이 파악된 것은 우리 실생활에 매우 요긴하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법인데 반해서 그 반대쪽으로 보자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무한대로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이번에 위치정보 파기 방법, 절차를 마련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해 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등록만으로 위치정보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졌는데 현재 260여개의 위치정보사업자 수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행정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회의에서도 폐업 절차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포함된 것 같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잘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접수받아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에 비해서 수시로 등록 신청을 받는 등록제는 시간이나 비용 소모가 줄어들어 스타트업, 영세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오·남용 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큰 정보로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감독이 보다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태 점검은 법규 위반사항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 볼 수 있는 절차로 위치정보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형식적 점검이 되지 않도록 향후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다>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 이유입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고시 관련해서 심사기준 현행화, 평가방식 개선 등 기존 관련 고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항목 현행화입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심사사항에 따라 92개 항목을 심사 중이지만 심사항목은 고시 제정 이후 10년 동안 개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고 최신 기술·보안 이슈 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하여 총 92개 심사항목을 87개 항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타 심사항목과 중복되는 사유, 현재 필요하지 않는 사유 2가지로서 총 87개로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92개 심사항목 모두 ‘적합’을 받은 신청기관에 대해서만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항목에 대한 경중(輕重) 고려 없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다소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요심사 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여기에 대해서는 ‘적합/부적합’ 판정을 하고, 그 외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항목별 점수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5개를 제외한 총 87개 항목 중 중요 심사항목(1-7. 대체수단의 안정성 확보) 21개 및 계량평가 항목(2-1. 기술적 능력, 2-2. 재정적 능력) 2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23개 항목에 대해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심사항목 총 64개에 대해서 총 1,000점 만점에 800점을 획득한 경우에는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해 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표>에 보시면 중요 심사항목 등이 ‘적합’을 받고 800점이 넘는 경우는 지정이 되는 것이고, 중요 심사항목이 ‘부적합’을 받으면 기타 항목이 800점이 넘더라도 지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 심사항목이 ‘적합’이 되고 나머지 항목이 800점 미만일 경우에는 미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사항목은 아래 <표>와 같은데 중간에 <1-7>번 항목이 중요심사 항목으로 적용되고, 2-1, 2-2번 2개 항목이 계량평가 항목으로서 적합, 부적합이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 중요도를 반영해서 배점을 부과해서 총 1,000점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개선사항입니다. 심사 일정을 예측 가능성 있게 바꾸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심사일정 전반을 공고하여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들이 미리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환경 변화 및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주민번호 대체 수단의 추가 또는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기존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련 고시에는 그동안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체적인 조건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심사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확인기관 업무를 고시에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원안 접수해 주시면 이 고시도 행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위 심사를 거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중에 고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본인확인기관 지정 문제없이 내가 나라는 사실을 국가기관이 아닌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에 관한 일이어서 그동안에 그런 자격을 줄 수 있는 사업자를 심사하는데 굉장히 장벽을 많이 쳐놨었지요. 그것에 대해 그동안 이러저러한 개선안이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나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외 다른 것까지 모두 만족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런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시의 적절해 보입니다. 여하튼 본인확인 문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그동안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시 92개 심사항목을 모두 통과한 사업자만 지정했는데 다소 과하다는 비판이 있어서 이것을 검토한 것 같은데, 고시 제정 10년 만에 이번에 심사항목의 경중을 구분하고 또 점수제로 변경해서 불필요한 심사항목을 간소화하여 합리적인 고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도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개선되어서 더 좋은 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사무처에서 정책의 직접 수혜자인 본인확인기관 사업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이번 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예고기간 동안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과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에 대비하여 심사기준과 평가방식을 정비해서 심사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중요심사 및 계량평가 외 심사항목에 대해 적합/부적합으로 판단하던 심사기준을 총점 제도로 바꾸었다는 것인데 신청사업자가 금융사, IT기업 등으로 다양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사기준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다만, 항목별 과락 점수가 없어지면서 배점이 낮은 심사항목을 등한시하거나 크게 미흡한 항목이 생길 수 있는데 지정조건 부가 등을 통해 적절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대로 접수하시는 것이지요?

○ 김 현 부위원장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1년도 제5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20분 폐회 】